

■ 건설 · 부동산 판결**[대법원]건설도급계약의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현장정리비용이 보험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의 공사불이행에 따른 공사를 준 사람(도급인)의 손해를 담보한다.

그런데 공사를 준 도급인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하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사대금, 자재대금,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이행보증보험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2004. 3. 31.선고 2003나23467판결)은 이러한 도급인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급인의 공사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아니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